






## 운전자 표지의 종류에 대하여

	양 식	표시대상자	표시 의무	다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초보운전자표지		보통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당해 자동차면허를 취득 중인 기간(당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함)이 통산 1년에 이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범칙금 4,000 엔 행정처분 점수 1 점	다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원 쪽 표시 대상자가 각기 해당하는 표지(마크)를 표시하고
고령운전자표지	(2011년 2월 1일부터) 	보통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연령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생기는 신체기능의 저하가 자동차 운전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표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벌칙은 없습니다)	보통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 위험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되는 당해 차량을 향해 ‘측방 간격 좁히기’ 또는 ‘차간 거리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전방 끼어들기’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 범칙금
	 당분간 변경전의 고령운전자 마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자표지		보통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령으로 정한 일정 수준의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당해 면허에 조건이 부가된 사람입니다.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범칙금 4,000 엔 행정처분 점수 1 점	대형차 (중형차를 포함) 7,000 엔 보통차·이륜차 6,000 엔 소형특수 5,000 엔
신체장애자표지		보통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지체부자유를 이유로 당해 면허에 조건이 부가된 사람입니다.	표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벌칙은 없습니다)	○ 행정처분 점수 1 점